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8. 13.(화) 16:0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6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안건 가> “시정명령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시정명령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9-40-156)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시정명령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재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입니다. 시정명령 내용은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표 개정과 관련한 노사협의 경과·실적은 매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을 위반한 KBS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17년 10월 감사원은 KBS 기관운영감사 시 ‘상위직급 비율 과다’를 지적하였고, 같은 해 12월 방통위는 KBS 재허가 의결 시 과다한 상위 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KBS는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18년 12월 방통위는 KBS 재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내용은 감사원의 ‘17년도 KBS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이후 '19년 6월 10일 KBS는 직급체계 개선 사측(안)만을 방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조건 위반사항을 3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5,000만원 부과 결정사항을 2019년 7월 22일 사전통지를 하고, '19년 8월 5일 KBS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시정명령 위반사항입니다. KBS는 '17년도 재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KBS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입장)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오늘 무더운 날씨에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상위직급 비율 감축 등 직제규정 정원표 개정」과 관련 '17년도 재허가 조건을 미이행한 KBS에 대해 개정된 정원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KBS는 시정명령 이행 기한인 2019년 6월까지 개정된 정원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허가 조건 및 시정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KBS에 시정명령 관련 행정처분(안)을 통지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당 행정처분의 실시에 앞서 당사자인 KBS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KBS 임병걸 전략기획실장님 맞습니까?

○ 임병걸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권오훈 혁신추진부장님 맞습니까?

○ 권오훈 한국방송공사 혁신추진부장

- 예, 맞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의견진술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진술을 위한 자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행정처분의 실시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KBS 측에 관련 소명을 듣고 향후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KBS 임병걸 실장님께서 이번 행정처분(안)과 관련해 3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걸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6월까지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최선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018년에 직급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현재 과반노조에 근접하고 있는 KBS 본부노조와 10여 차례에 걸친 직급체계 개선(안) 논의를 시작했고, 또 임원회의 보고, 또 이사회 2차례에 걸친 보고, 그리고 다시 과반노조에 근접하고 있는 본부노조를 포함해서 저희가 3개의 노조가 있는데, 3개의 노조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직급체계 개선 노사 합의방안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다시 2019년에 TF를 구성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직급체계 개선(안)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은 2018년 7월 저희 상위직급인 1 직급과 관리직급의 승진을 유보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선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원의 분리나 상위직급 폐지, 또 보수체계와 승진체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제도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반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 저희들은 과반노조가 된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과반노조에 근접하고 있는 본부노조에서 부족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만 2월에 280명, 또 4월에는 69명, 6월에는 40명, 7월 말 현재로 38명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현재 상반기에 채용한 지역 경력 공채사원 약 30여명과 안전요원 가운데 일반적으로 전환한 요원 10여명, 그리고 3분기가 되면 퇴직하는 인원 64명 정도를 감안할 때, 또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무노조에서 본부노조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3분기에는 과반노조가 달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노사합의 TF를 통해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공사의 생존 자체가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사가 이해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도 이미 보고해서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과반노조가 성립하는 즉시 과반노조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까지 3분기에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생각만큼 되지 않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노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KBS의 시정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실 분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먼저 KBS가 상위직급 비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또 2017년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통위가 재허가 때 조건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 6개월 이내에 해소하라고 조건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반상태가 1년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KBS의 태도가 너무 성의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해묵은 과제인데 그때마다 감사원의 동일 사안의 반복된 3차례의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미흡했고, 또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결과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KBS 진술을 들어보면 '과반노조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역대 전임 사장들로부터 시작된 이런 상위직급 비율이 과다하다는 그런 해소 노력이 과연 어느 정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 들어와서 지금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신 지가 한번 연임까지 했으니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7개월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노조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단순히 과반노조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 가지고 익스큐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연 과반노조가 이달 안으로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노조도 자기들 상위직급 자리를 없애는 이런 계획에 대해 과연 동의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임병걸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우선 첫 번째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이번 3분기에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2018년 6월부터 직급체계 개선TF를 만든 이후에 3개 노조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했고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노조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승진기회 불이익도 있는 것이고 승진기회 불이익은 자연스럽게 급여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탄치 않았습지만 어떻게 보면 KBS 경영의 위기나 재정의 압박이 노조에게도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린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설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TF와 설명회를 거쳐 공감대를 완벽하게 거의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희들은 과반노조가 달성되면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력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 7월에 우선 관리직급과 1직급에 매월 7월이면 승진이 됩니다만 그것을 유보시켰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개선안에 공감대가 없다면 이 부분부터 매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할 때, 경영진에 보고할 때, 또 노사와 합의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더 이상 생존 차원에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길 수 없다는 데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에는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해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KBS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10년 이상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전임 사장 재임 중에 이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금 현 양승동 사장님 체제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KBS 노조가 3개나 있는데 주로 본부노조가 7월 말 현재 38명이 노조원이 과반에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지역 경력공채자 그리고 안전요원들까지 하면 40여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본부노조에 가입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노조가입은 본인들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3개 노조 중에서 어디에 가입할지 모르는데 본부노조에 가입을 이분들이 모두 하는 것을 전제로 과반노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 임병걸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아까 3가지를 드렸는데 우선 그 부분은 대체로 본부노조는 거칠게 나누다면 기자·PD 중심이고, KBS노조는 경영과 엔지니어 중심입니다. 이번 경력공채는 대부분 지역의 기자들과 PD들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성향으로 보면 본부노조로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큐리티 노조는 그동안 역시 KBS 시큐리티와 저희들이 각축으로 해서 여러 차례 성향이나 의지를 본 결과, 본부노조의 성향에 가깝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하나 분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분모가, 저희들이 현재 연간 약 250명 정도 퇴직을 하는데 3분기 말에는 64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본부노조의 노조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트렌드를 매일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최근 본부노조에 일정 부분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38명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아까 말씀 중에 3분기까지면 9월 말까지입니다. 9월까지의 상위직급 비율이 과도한 직급체계를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믿어도 될 만큼 확실한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 임병걸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왜 이것을 여쭙보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6개월의 시정명령 시한을 설정해드렸는데도 그것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정명령을 추가로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오늘 의견진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임병걸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저희들이 노사가 합의하고서 이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시점을 이행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보고를 했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합의가 되는 순간 바로 임시이사회를 요구해서 10월 중순까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일단 말씀해 주신 사항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KBS의 상위직급 비율이 과다하다는 것은 이번에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사측이 마련한 직급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1직급과 관리직급을 없애고, 2직급이 제일 높은 직급이 되는데 2025년에 2직급의 비율이 48.8%로 되어 있습니다. 48.8%면 거의 49%인데 2직급이 절반이고, 나머지 직급이 절반인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KBS의 현재 굉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고직급이 2직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른바 국장도 2직급, 부장도 2직급, 일반직원도 2직급 여기에 다 몰리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것까지 차후에 계속 검토하고 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KBS가 차장 시험제도를 통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거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 전부터 그것이 없어져서 마구 올라가는 구조가 되면서 상위직급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형태가 됐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르는 장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다른 지상파도 마찬가지로지만 경영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위직의 고임금자들이 많으면 경영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이 KBS 사측과 노측의 밀월관계, 거기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것을 개선한다는 노력은 평가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10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사회 통과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통위원회가 KBS 측과 협의해서 노사합의가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그동안 이행했던 것들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부분 다 이행하셨지요?

○ **임병걸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노사협회가 필요한 사항 빼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 **임병걸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제 기억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15가지가 되는데 3가지 정도 노사 합의 필요한 것 말고는 대부분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KBS 측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섭권을 갖는 과반노조가 없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감사원의 상위직급 비율 과다 지적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다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다른 사례에서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이 자리에 KBS를 대표로 해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허 욱 상임위원**

- 과반노조가 될 것이라든가 것만이 아니라 기존 1노조 포함해서 3개 노조와 계속 노사 간 협의가 진행해 왔다면 그분들과도 일정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입니까? 물론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과 일정시점 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은 3개 노조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 **권오훈 한국방송공사 혁신추진부장**

- 3개 노조 조합 간 입장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합원 구성원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이 사안이 어쨌든 감사원의 반복된 지적,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 사안을 반드시 KBS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노조 중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반노조, 과반을 넘는 노조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에서는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교섭대표 노조인 앞으로 과반노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경우 집행부가 일정 부분 직급체계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그 방향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직원들 반수 이상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수 노동조합과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직원 전체에게 일정시점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특히 KBS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호소한다면 보다 더 전향적으로 주어진 시점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오훈 한국방송공사 혁신추진부장**

- 저희가 직급체계 개선(안)의 방법론상 2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반노조,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한 방법이 한 방법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

근로자의 과반의 개별 동의를 구하는 방법, 2가지 중에서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과반노조 성립 시점을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과반노조 성립이 늦어지거나 과반노조의 반대 때문에 이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전체 근로자의 과반의 개별 동의를 통한 방법까지 검토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진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KBS 측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걸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거듭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KBS 임병걸 실장님과 권오훈 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KBS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퇴장)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가>에 대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KBS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직제 규정의 정원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하였으나 과반노조가 구성되지 않아 노사합의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직급체계 개선을 위한 사측안만을 제출하였던 점, 최상위 직급 승진 유보, 상위직급 비율 축소 등 재허가조건 부가 이후 직급체계 개선을 위한 KBS의 노력, 2019년 6월 10일 KBS가 제출한 사측안에 따르면 '19년도 3/4분기 이내에 노사합의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 정원표를 제출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재허가조건 위반사항을 3개월 이내에 시정하고, 정원표 개정 관련 노사합의 경과·실적을 매월 말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행정처분 통보 등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의결안건 가>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안건은 KBS의 재허가조건에 부과된 시정명령 후속을 다룬 안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KBS 측의 의견을 들었고, 원래는 시정명령 이행이 안 되면 과징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안인데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안건은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확인한 바대로 KBS 측에서는 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10월 중순까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답을 냈기 때문에 3개월까지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한다면 10월 중순까지는 2개월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명령을 다시 하되, 그 기간을 2개월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보고된 안건은 공영방송 KBS의 새 경영진이 과도한 상위직급 문제 등 누적된 경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개혁의지와 성과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KBS는 상위직급 비율의 과다에 따른 인력 운영 비효율에 대해 감사원에서 2008년도 운영실태 감사, 2013년과 2017년 기관운영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도 2017년 재허가조건을 통해 인력구조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요구했고, 작년 말 재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경영상의 문제를 현 새 경영진에게 단시간에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직급체계 개선을 위한 사측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그리고 상위직급 비율 감축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보수와 승진기회를 줄이는 취업규칙상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처분안에 대한 오늘 의견청취 때 복수노조 중 한 곳이 곧 과반수 노조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과, 그 과반수 노조의 입장, 또 향후 노사협회의와 이사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등을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처분 전례를 고려하면 경제별인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재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고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KBS 노사 간의 개선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이번 경우에 한해서 다시 한 번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 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시정명령을 내리지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따른 형평성과 일관성의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한 달가량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KBS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임원들의 임금삭감, 직원들의 복지 축소 또 승진기회의 차단 및 각종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환경 악화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과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통렬하게 각성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작업에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표 위원님과 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통상 시정명령하면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해오고 있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과거 사례를 보면 3개월에서 1년까지로….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충분히 또 이렇게 하고,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한 전례가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정명령을 KBS 쪽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아닙니다. 노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한 특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도 재허가 심사 시 감점사항입니다. 시정명령을 했다고 해서 가볍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이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원안대로 3개월 정도 줘서 그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이행하여 기간을 단축하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는 원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 사안은 KBS가 분명히 시정명령을 한 차례 내린 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두 번째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면 과징금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과반노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부분들은 받아들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면제해 주자는 데에는 대개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방송 사업자들이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에 이처럼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이것이 사례가 되는 셈인데 다른 방송사업자들에게 혹시라도 경각심을 해이하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만약에 면제해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느슨한 조건들을 압박하는 이런 조치는 따로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시정명령을 3개월 이내 이행하라는 내용에서 좀 더 단축을 한 달이라도 해서 2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더 재허가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1개월 단축안에 찬성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네 분 다 의견 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분 의견만으로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전체의 주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과 상관없이 의결주문의 시정명령안 내용 중 “3개월”을 “2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9-40-157 ~ 159)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대전문화방송(주), 대구문화방송(주)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시정명령(안) 내용은 ‘18년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미준수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허가조건으로 부가된 ‘19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할 것입니다. <2> 제안이유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KBS, 대전MBC, 대구MBC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16년 11월 11일 1단계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국에 대한 신규허가 의결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2017년 5% 이상, 2018년 10% 이상, 2019년 15% 이상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17년 9월 28일 2단계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에 대한 신규허가 의결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2018년 10% 이상, 2019년 15% 이상, 2020년 25% 이상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1·2단계 UHD 방송사는 ‘18년도 허가조건 이행실적을 제출하였으며, ‘19년도 2월~7월까지 제출된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19년 7월 22일 KBS·대전MBC·대구MBC에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결과, ‘19년 7월 29일 대구MBC만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허가조건 위반사항입니다. KBS, 대전MBC, 대구MBC는 허가조건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18년도 기준 전체 방송시간 대비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나, ‘18년도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KBS 1TV는 8.5%, 대전MBC는 9.3%, 대구MBC는 9.3%로 3사 모두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10%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KBS·대전MBC는 제출한 의견이 없었으며, 대구MBC는 매출악화 개선을 위해 자체편성을 통한 광고수익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동 시간대 편성된 서울MBC의 UHD 프로그램 수증계를 받을 수 없어서 ‘18년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10%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경영 악화로 UHD 자체제작이 어려워 서울MBC 수증계에 의존하는 지역방송사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19년도 UHD 편성비율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6> 사무처 검토 의견입니다. UHD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 허가조건 부가 취지, 허가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심인들에게 의결 주문과 같이 '향후 편성비율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19년도 편성비율 준수'하라는 취지의 시정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입니다. <7>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시정명령 통보 등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것이 '18년도는 10% UHD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면 KBS-1TV가 8.5%밖에 못 합니다. 다른 데도 두 군데가 위반했는데 9.3%, 이것도 KBS-1TV가 가장 낮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KBS가 걸리는지,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모든 것이 모범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결했던 장애인방송 수어방송 비율, 또 자막 비율, 이것도 주요 지상파 3사 중에 꼴찌입니다. 교육방송 EBS까지 포함해서 지상파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KBS가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MBC와 SBS는 UHD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MBC의 경우 '18년도 실적이 10.4%, SBS의 경우 11.3%로...

○ 김석진 상임위원

- 보십시오. 다 10% 넘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국가기간방송 KBS-1TV만 모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방송사가 한심합니다. 대구MBC에서도 유일하게 사업자 의견을 냈는데 '아직 광고가 시급하고 광고수익 개선을 거기에 우리가 너무 절박하게 매달려야 하니까 UHD 편성비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의견진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국민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 시정명령만 내리는 것입니까? 과징금은 따로 붙지 않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본 사항은 허가조건을 첫 번째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명령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규정이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꼭 각성하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옛날에 '16년도 3년 전에 MBN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볼 때 재방비율 미준수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행정제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에는 엄정하게 내려줄 것을 당부합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때 정책 주안점으로 둔 UHD 투자실적과 UHD 전용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에 대한 제반 상황을 살펴보고, 2018년도 허가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이행실적 점검 결과, KBS와 대전MBC, 대구MBC가 방송시간 대비 10%에 못 미쳐서 허가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법제화를 통해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파 UHD 방송은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정부가 UHD 방송국 허가를 하면서 UHD의 전환을 유도하고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세부적인 조건들을 부가했습니다. 따라서 허가조건 이행은 지상파방송사가 700MHz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할당받으면서 다짐한 시청자에 대한 약속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MBC에서 김석진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출한 의견을 보면 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체 인력과 장비로 UHD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방의 이야기를 지방 주민들에게 UHD 화질로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자체편성비율 강제의 정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수중계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은 것도 모자라서 자체 광고수익을 위한 방송 때문에 수중계도 못 받는 상황들을 고려해 달라는 것을 의견서로 제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KBS가 수도권 UHD 편성비율을 위반한 것도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인 KBS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이 역시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두 분이 말씀을 다 하셔서 덧붙일 내용이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 위원님도 의견 없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제가 드린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올해 '19년도에는 15% 정도를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간점검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5%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0%인데 못 지킨 곳이 세 군데 나왔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19년도에 일부 사업자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몇 군데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부 사업자가...

○ 김석진 상임위원

- 일부 사업자, 몇 군데인지는 모릅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사실상 점검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올 연말까지 봐야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 매년 약속을 이렇게 어깁니다. 올해 '19년도는 내년에 점검해서 또 시정명령을 내릴 텐데, 도대체 몇 개의 사업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5%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0년도 내년에는 25% 편성비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시정명령, 제 생각에는 엄중하게 내리고 싶은데 규정상 시정명령밖에 못 내리는 것이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하여튼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무적으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배경입니다.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국의 UHD 편성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제작·투자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추진 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1단계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했습니다. ‘17년 3월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9월 2단계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3월 지상파방송사는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였고, 방통위는 ‘19년도 4월부터 「지상파 UHD 추진점검 TF」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정기준(안)의 내용입니다.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정의는 영상신호 형식은 순차주사 방식으로서 주사선 수가 2,16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수가 3,840 이상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며, 단위 방송프로그램의 50% 이상이 4K화질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시간 50% 추가 인정기준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파 UHD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은 드라마, 다큐, 국민 관심행사, 어린이·청소년·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그램, 지역 자체 제작물로 공동제작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되는 UHD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다음 반복방송 인정기준은 삼방송을 초과한 반복 방송 시간은 인정하지 않고, 재방송 UHD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은 100% 인정하되, 삼방송 UHD 프로그램 편성 시간은 ‘22년도까지 100%, ‘23년도부터는 50%만 인정합니다. 재가공 방송 프로그램(업스케일링/리마스터링)에 대한 인정기준은 당초대로 업스케일링한 UHD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고, 리마스터링한 UHD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은 ‘22년도까지 100% 인정하되, ‘23년도부터는 50%를 인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작여건을 고려한 예외 인정사항입니다. HD/UHD 채널에 드라마를 동시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HD로 방송 후 7일 이내에 UHD로 방송하면 초방에 한하여 UHD 본방송으로 간주하고, UHD 프로그램은 50% 이상이 4K 영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작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50% 미만이 4K 영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4K로 방송된 시간만을 인정하겠습니다. 2가지 사항은 기존 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UHD 스튜디오 및 UHD 중계차 제작 프로그램은 30% 이상이 4K 영상으로 구성된 경우 초방에 한하여 편성시간 100% 인정한다입니다. 예외 인정조항은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집계 주기입니다. 분기별로 편성비율을 집계하고, 의무 편성

비율 준수 여부는 연간 편성실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지역방송사의 수중계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은 지역방송사가 수중계하는 UHD 프로그램도 인정하며, 가중치·리마스터링·반복방송 인정기준은 수도권 지역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입니다. 인정기준 적용시점은 올해 3/4분기인 10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UHD 프로그램 인정 기준을 방송사에 통보하고 일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때 부가한 UHD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이행하지 못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이행조건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환경의 급변으로 지상파방송사의 UHD 제작 및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UHD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보고된 안건입니다. 이번 기준 완화는 방송사에게는 제작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UHD 수신기 보급률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UHD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시청자들의 상황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 가운데 '19년, 즉 올해는 15% 편성하고, 2020년에 25% 이상 편성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방송사업자들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을 3년 정도 순연하는 계획안, 25%를 편성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줄여 보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의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오늘 안건에 들어간 인정기준과는 별개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UHD 정책이 2015년에 설립될 때와 지금은 방송환경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UHD 방송을 시작할 때 거의 전제조건처럼 되었던 것들이 가령 광고 규제 완화, 혹은 MMS 방송, 그리고 직수율을 높이는 내용들이 4년 반이나 지났지만 거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지상파들의 경영여건은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편성비율 포함해서 직수율 문제나 실제로 방송사들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직수율 5% 수준 이상 되어서는 실제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지상파 UHD 프로그램이 케이블이나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재전송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UHD TV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계속 보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UHD 정책에 대해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된 안건이 접수가 되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정기준안, 즉 규제 완화안이 시행되면 각 방송사들이 UHD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 그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사를 통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한 2%p 정도 상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전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p 정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보고한 안건의 접수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삼방송 문제인데 재방·삼방, 재방까지는 100% 인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삼방까지 나가는 것은 이미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UHD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환경 같으면 재방송까지 나갔으면 이미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획기적으로 삼방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 이후인 2022년까지 100% 인정해 주겠다, 너무 파격적으로 지상파 쪽 어려움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UHD 정책의지가 퇴색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하나 확인해 봅시다. 현재 재방비율은 '19년 올해 3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이 그렇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행은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10월 1일부터 재방은 몇 년도까지 100% 인정되는 것입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100% 인정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당장 30%에서 100%로 재방 인정비율이 올해 10월 1일부터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올해 안에 갑자기 이렇게 30%에서 100%로 인정되고, 삼방은 지금까지 일체 허용하지 않다가 당장 10월 1일부터는 앞으로 3년간 100% 인정해 준다, 너무 오른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서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시뮬레이션해 봤습니까?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들이 방송사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요청한 결과, 2% 정도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방송사의 경우에는 뉴미디어 보급이나 시청 행태가 변화해서 기존에 있었던 유료방송과는 달리 지상파방송 입장에서는 반복방송을 통한 방송노출을 통해 시청자의 UHD 시청권을 확보한다는 편성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통위 변경안을 삼방까지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부 명품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반복방송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과도하게 삼방, 사방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책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방송사의 요구나 방송사의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UHD TV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최소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TV를 산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케이블을 통해 나가지도 않고 직수율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TV를 산 사람들이 현재 같으면 15%, 그것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심스러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방송사들의 판단에 따라 삼방을 해서라도 UHD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서비스해 준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삼방까지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방송사들 요구는 삼방송이든 사방송이든 계속 다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 정책이나 또 UHD 전체적인 정책을 봤을 때 계속 후퇴하면 안 되니까 2022년까지는 어쨌든 사실상 일정 부분 인정해 주더라도 그다음부터는 50%만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절충형의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상파의 어려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도움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잘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HD에 대한 투자, 제작이나 설비나 편집 장비 등 늘려나가야 하는 방송사들의 내부적인 움직임이 '안 해도 되네? 1편 만들면 삼방까지 앞으로 3년간 우려먹을 수 있다'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진정한 시청자의 시청복지를 위해서라면 UHD를 만든 것을 자주 볼 수 있는, 노출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퀄리티지요. 그래서 방송사 이야기만 너무 우리가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방송사에서 반드시 UHD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금주파수인 700MHz 대역을 공짜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약속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후퇴한다거나 퇴색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분명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들의 이익과 방송사들의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재로서는 지상파가 직수율을 높이거나 혹은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재송신될 때까지 최소한 2022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때까지는 인정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제작투자를 늘릴 것을 강한 메시지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상파들이 아시다시피 경영환경이 어렵고 광고로 먹고 사는데 삼방송 이상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시청자들의 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삼방송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우리 실무전에서 이것저것 감안해서 이런 안을 만드셨는데 이 기준이 2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뀌는 것 아닙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정책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UHD 정책과 관련해서 이 안은 교육지책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방송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UHD 정책 가운데 특히 프로그램 부분에서 느슨해진 것이라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까지 100% 인정해 주는 것 말고도 UHD 스튜디오하고 중계차 제작프로그램 30% 이상이 4K일 때 초방에 한해서 편성시간 100% 인정해 준다,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교육지책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편성 비율을 25%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봐야 2%p 정도 개선효과가 있다면 실제 달성 되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내게 된 것도 방송사들 경영이 어려워져 투자를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UHD 정책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들이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황금 주파수대 무료로 배정받은 것, 이것이 세계에서 유일한 것 아닙니까? 주파수 받아놓고 경영의 어려움 등등을 내세워서 이렇게 느슨하게 지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자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께서 다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도 거기에는 다 공감합니다. 경과사항에 「지상파 UHD 추진점검 TF」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운영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운영 중입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TF는 3차까지 회의를 마쳤고, 주요한 사항은 논의됐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일단 잠정적으로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건에 보면 지상파방송사들이 건의한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 완화 등에 대한 의견제시, 관련 내용이니까 했겠지만 어떠한 논의가 하고 있지요?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콘텐츠 투자비율, 투자계획, 그다음에 의무편성비율, 인정기준 등에 대해 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런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제가 2년 반 전에 지상파 UHD 신규허가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을 다 예상했습니다. 예상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제3기 방통위 때 700MHz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UHD로 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 저희들이 소극적이었지요.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다가 잘 아시다시피 국회 주파수 배정 특위에서 강제적으로 배정을 결정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왔고, 그때 어느 정도 지금의 이러한 지상파 UHD가 디지털 방송을 대체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게 어렵게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방통위, 과기부, 그다음에 지상파 4사, 연구기관까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지상파 UHD 정책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만일 여기에서 논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고, 또 결과도 유아무야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계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있는 것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신규 지상파 UHD 사업 허가 심사위원장이로서 그때 우려했던 사항들,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대체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이 가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중에 가서 봐보십시오. 전부 UHD TV이고 다 스마트TV입니다. 정말 비싼 가격을 주고 국민들께서는 수상기를 구입하는데

불만한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료방송 UHD 채널 까지 포함해서 국민들 관점에서, 수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UHD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상파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입니까? UHD 콘텐츠 정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인정기준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상파 UHD 정책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해외사례가 지상파 UHD 하는 나라가 지상파 UHD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UHD TV 보급현황을 포함해서 한국의 UHD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 글로벌 OTT도 지향하고 있고, 어쨌든 콘텐츠 UHD 프로그램은 계속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보급되어야 하는 당연한 지향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UHD 정책 전반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UHD 정책은 나온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것도 지상파에게 주파수까지 주어가면서 UHD 방송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려면 '알아서 하라', 할 수 있는 방법은 IPTV도 있고 케이블 TV도 있고 위성방송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 프로그램을 더 화질 높게 하라는 것이고, 대체적인 다른 세계적인 추세는 '시청자들에게는 현재 HD로도 충분하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4K 대신에 8K로 한번 치고 나가려는 것 같은데 그것도 NHK가 혼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8K로 간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갔지만 직접 수신으로 한다는 조건 때문에 오히려 더 보급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 성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뻔질식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정책이 누더기가 되고 뭔가 전환해야 할 때 제때 못 해서 우리가 일찍 시작했으나 더 늦어져버리는 결과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 전면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학에서 '누더기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정책이 누더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필요하다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에 관한 정책을 바꾸려는 개선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자꾸 뻔질식으로 조금씩 고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우리가 앞서가더라도 너무 앞서가도 곤란하고 너무 늦어도 곤란한데 이것을 앞서 가면 UHD 모니터 제조업체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용자에게도 꼭 좋은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8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시 18분 폐회 】